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법원내부)

2021. 5.

사법지원실[형사]

1. 개요

- 기간 : 2021. 5. 3.(월) ~ 2021. 5. 10.(월)
- 실시 방법 및 대상자 : 전국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코트넷 메일을 통해 실시
- 총 설문 대상자 수 : 18,528명
- 총 설문 응답자 수 : 1,990명
- 응답 비율 : 10.7%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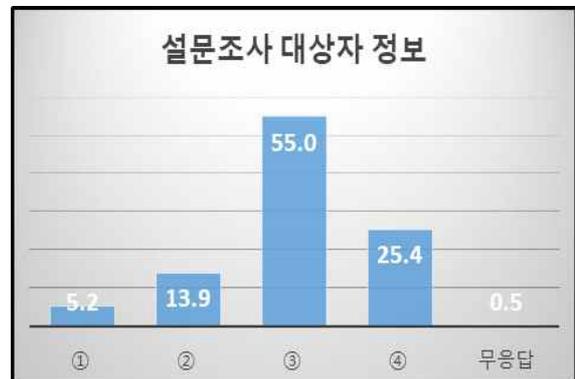
■ 설문조사 대상자 정보

1. 귀하의 직책은 무엇인가요?

- ① 법관(재직기간 10년 미만) ② 법관(재직기간 10년 이상)
③ 법원공무원(6급 이하) ④ 법원공무원(5급 이상)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04	5.2
②	276	13.9
③	1,094	55.0
④	506	25.4
무응답	10	0.5
합계	1,990	100.0



※ 법관 : 380명, 법원공무원 : 1,600명, 무응답 :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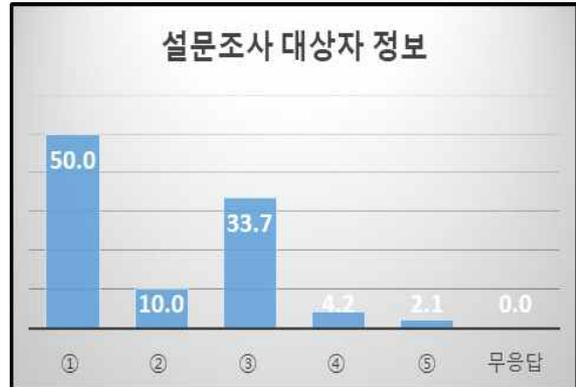


2. 근무기간 동안 영장전담판사(당직 제외) 또는 영장 관련 업무(형사과 영장계)에 종사한 기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 ① 없다. ②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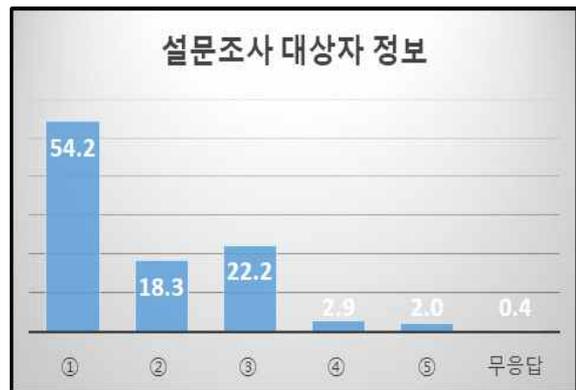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90	50.0
②	38	10.0
③	128	33.7
④	16	4.2
⑤	8	2.1
무응답	0	0.0
합계	380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867	54.2
②	292	18.3
③	355	22.2
④	46	2.9
⑤	34	2.0
무응답	6	0.4
합계	1,600	100.0



▣ 제도 도입의 필요성

[영장심사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보석조건부 영장제도)]

-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보증금,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행법의 태도]

- 영장기각결정이나 발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영장재청구와 구속적부심으로 구속과 석방을 신청하여야 함. 구속적부심에서는 기각결정, 석방결정 이외에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기소전 보석)이 가능하나, 비금전적 석방조건만 부과하는 것은 불



가능하여 무자력자, 소년범 등의 이용이 제한됨

[각국의 구속대체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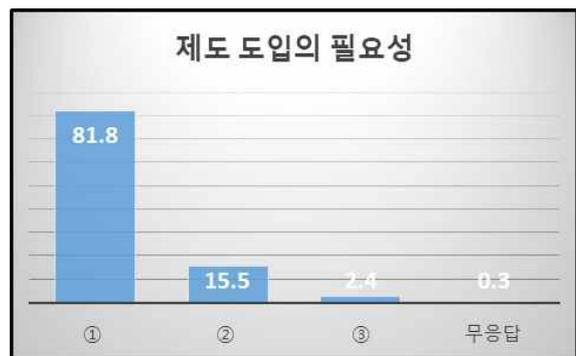
- ① 최초기일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미국) - 체포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여 열리는 최초의 출석기일에서 서약서나 보석금 등 석방조건을 정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 ② 구속집행유예제도(독일) -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출석의무, 주거지 이탈 금지의무, 담보 제공의무 등의 처분으로 구속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③ 사법통제명령 제도(프랑스) - 구속과는 별도로 공무원의 정기적 출석,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정하여 사법통제명령을 내리고, 이것만으로 불충분한 때에 한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됨

3.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구속을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및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정부안), 제18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을 대체하는 석방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신가요?

- ① 도입 필요성 있음 ② 도입 필요성 없음 ③ 모르겠음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311	81.8
②	59	15.5
③	9	2.4
무응답	1	0.3
합계	380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977	61.1
②	510	31.9
③	110	6.9
무응답	3	0.1
합계	1,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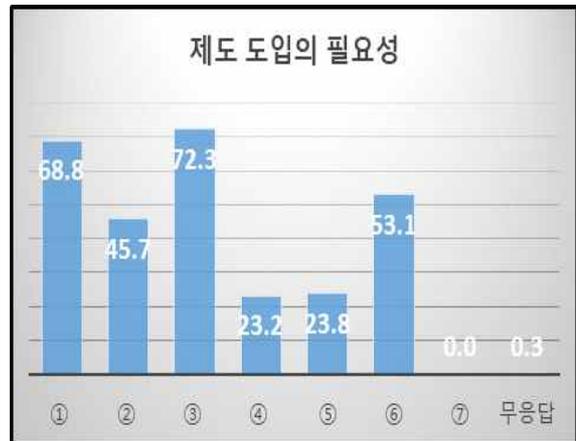


4. (3-①항에 답변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선택 가능)

- ①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의 실현에 부합함
- ② 영장심사의 본안재판화를 방지할 수 있음
- ③ 구속과 불구속의 한계에 있는 경우 구속을 하면서 조건부 석방을 하게 되면 구속과 불구속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 ④ 영장발부 후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하는 것은 우회적인 절차임
- ⑤ 보증금 납입 외 비금전적 조건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가난한 서민을 위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음
- 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피의자의 도주나 재범 예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⑦ 기타()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응답비율(%)	백분율(%)
①	214	68.8	24.0
②	142	45.7	15.9
③	225	72.3	25.2
④	72	23.2	8.0
⑤	74	23.8	8.3
⑥	165	53.1	18.5
⑦	0	0.0	0.0
무응답	1	0.3	0.1
합계	893	287.2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응답비율(%)	백분율(%)
①	581	59.5	26.3
②	261	26.7	11.8
③	553	56.6	25.1
④	138	14.1	6.3
⑤	307	31.4	13.9
⑥	362	37.1	16.4
⑦	2	0.2	0.1
무응답	2	0.2	0.1
합계	2,206	22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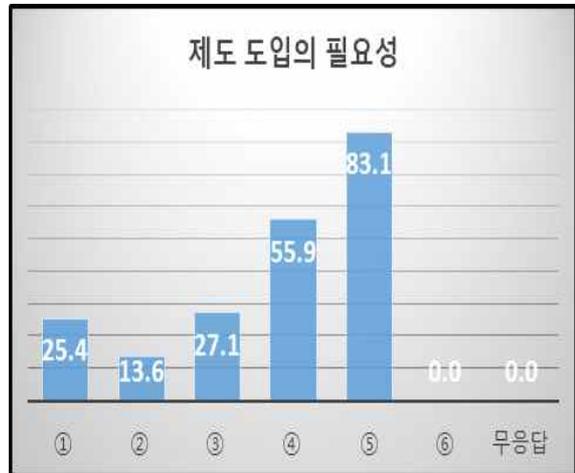


5. (3-②항에 답변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선택 가능)

- ① 구속사유 있는 피의자를 조건부로 석방하게 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② 조건부석방은 처벌약화를 의미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게 되어 부적절함
- ③ 판사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영장발부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④ 영장을 기각해야 할 사건들이 오히려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부로 석방을 명하는 변형적 형태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⑤ 현행 법령에서도 구속적부심과 보석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건부석방제도는 불필요함
- 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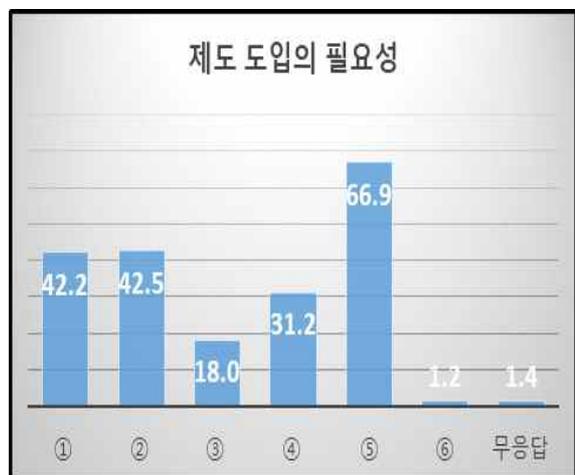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응답비율 (%)	백분율 (%)
①	15	25.4	12.4
②	8	13.6	6.6
③	16	27.1	13.2
④	33	55.9	27.3
⑤	49	83.1	40.5
⑥	0	0.0	0.0
무응답	0	0.0	0.0
합계	121	205.1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응답비율 (%)	백분율 (%)
①	215	42.2	20.7
②	217	42.5	20.9
③	92	18.0	8.9
④	159	31.2	15.3
⑤	341	66.9	32.9
⑥	6	1.2	0.6
무응답	7	1.4	0.7
합계	1,037	20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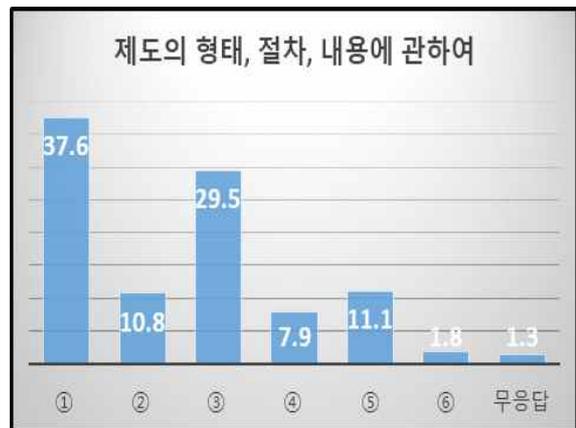
▣ 제도의 형태, 절차, 내용에 관하여

6.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을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본적인 체계와 형태는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①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조건부 석방을 명하는 형태
- ②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하되 독립된 처분으로 규정하는 형태(구속영장 발부 및 별도 결정 필요)
- ③ 구속영장 발부, 기각, 조건부 석방결정 중에 택일하는 형태
- ④ 구속영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규정하는 형태(조건 준수명령, 구속대체처분, 사법통제명령, 사법감시명령, 조건부과처분 등)
- ⑤ 모르겠음
- 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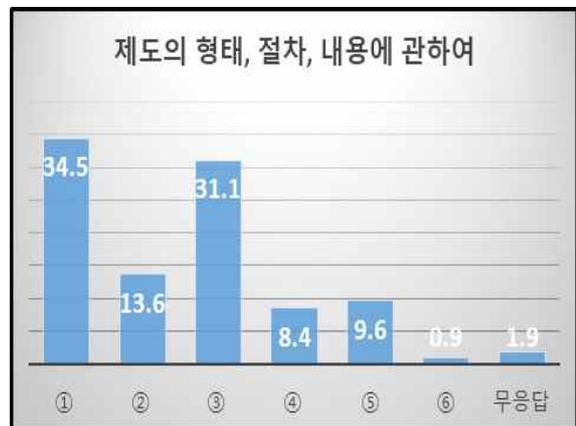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43	37.6
②	41	10.8
③	112	29.5
④	30	7.9
⑤	42	11.1
⑥	7	1.8
무응답	5	1.3
합계	380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552	34.5
②	218	13.6
③	498	31.1
④	135	8.4
⑤	153	9.6
⑥	14	0.9
무응답	30	1.9
합계	1,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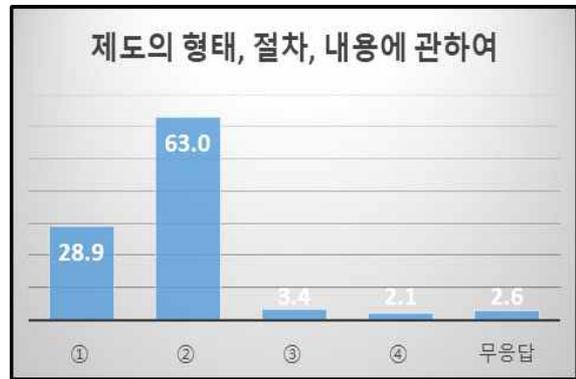


7.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조건부석방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신청권 필요함(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대체처분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의무화함, 대체의 무에 대한 피의자의 의견제시, 보증서 제출 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대체처분을 원활히 하는 의미가 있음)
- ② 신청권 필요하지 않음(신청이 없더라도 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면 실익이 없음,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 조건부석방신청도 따로 기각하여야 하는지 등 업무처리의 번잡 우려)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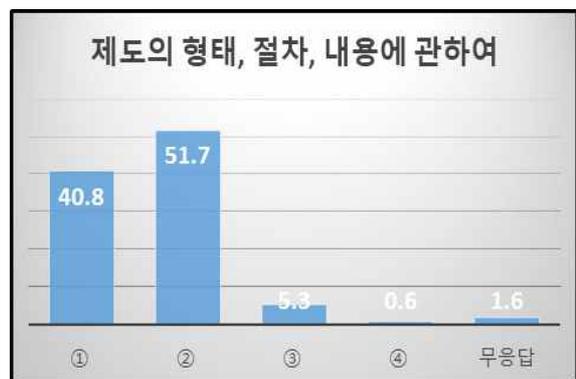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10	28.9
②	239	63.0
③	13	3.4
④	8	2.1
무응답	10	2.6
합계	380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653	40.8
②	827	51.7
③	84	5.3
④	10	0.6
무응답	26	1.6
합계	1,600	100



8. 검사에게 조건부석방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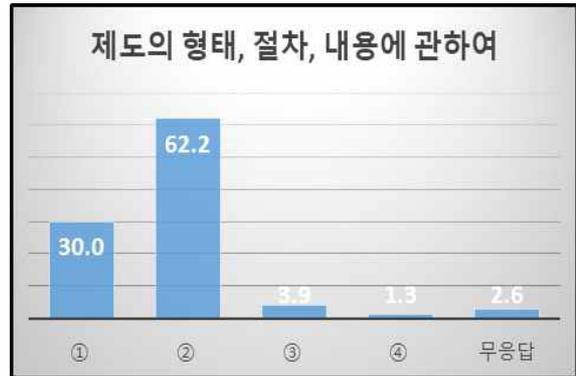
- ① 신청권 필요함(검사 입장에서 피의자의 출석만 담보된다면 구속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건에서 활용될 여지 있음)



- ② 신청권 필요하지 않음(구속영장 청구권이 있으므로 별도의 조건부석방 신청권 불필요)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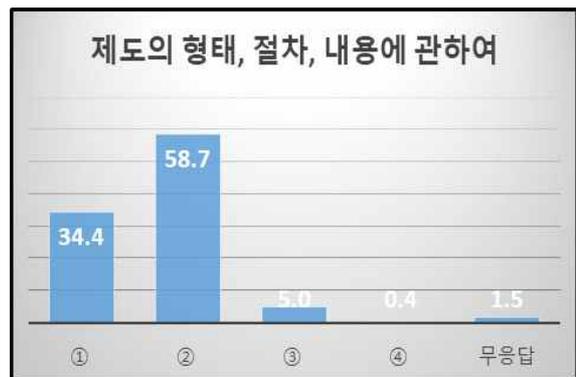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14	30.0
②	236	62.2
③	15	3.9
④	5	1.3
무응답	10	2.6
합계	380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551	34.4
②	939	58.7
③	80	5.0
④	6	0.4
무응답	24	1.5
합계	1,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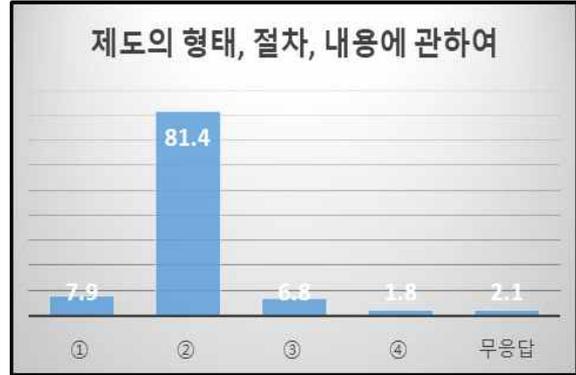
9.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를 보석제도(형사소송법 제95조)와 같이 '필요적 석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속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① 필요적 석방 규정이 필요함(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조건부석방을 하도록 규정)
- ② 임의적 석방으로 해도 무방함(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재량적으로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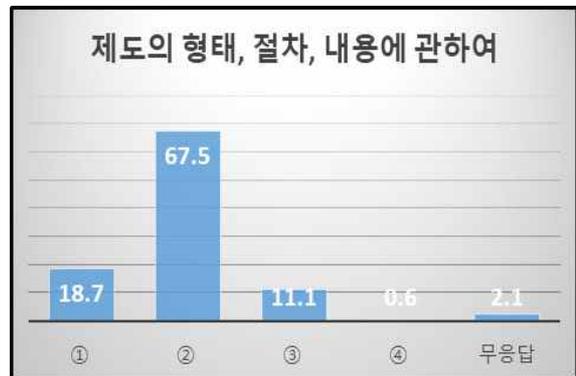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30	7.9
②	309	81.4
③	26	6.8
④	7	1.8
무응답	8	2.1
합계	380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299	18.7
②	1,080	67.5
③	177	11.1
④	10	0.6
무응답	34	2.1
합계	1,600	100.0



10. 조건부 석방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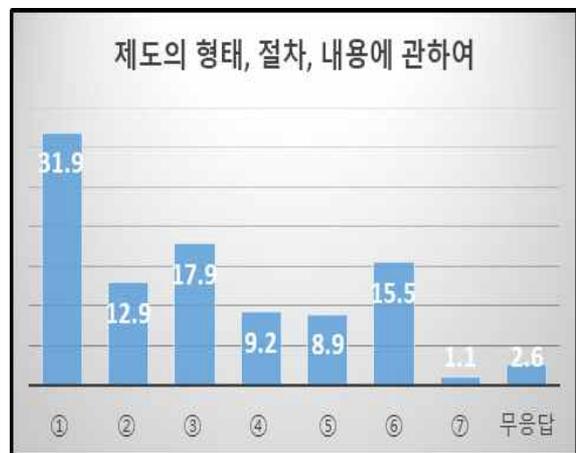
- ① 구속사유와 중복되는 예외사유를 따로 둘 필요 없음
- ② 구속적부심의 예외사유와 같이 규정
- ③ 필요적보석의 예외사유와 같이 규정
- ④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예외사유와 같이 규정
- ⑤ 구속적부심, 보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른 별도의 기준 필요
- ⑥ 모르겠음
- ⑦ 기타 ()



구속적부심 (형소법 제214조의2 제5항 단서)	필요적보석 예외사유 (형소법 제95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9. 13. 의안번호 15494호로 발의된 것, 2019. 8. 8. 의안번호 21884호로 발의된 것)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때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21	31.9
②	49	12.9
③	68	17.9
④	35	9.2
⑤	34	8.9
⑥	59	15.5
⑦	4	1.1
무응답	10	2.6
합계	380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360	22.5
②	213	13.3
③	365	22.8
④	153	9.6
⑤	225	14.1
⑥	246	15.4
⑦	15	0.9
무응답	23	1.4
합계	1,600	100.0



11. '석방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구속적부심과 같이 보증금 납입으로 제한
- ② 보석의 조건과 같이 보증금 납입 외 8가지 금전, 비금전 조건을 준용
- ③ 구속적부심, 보석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
- ④ 모르겠음
-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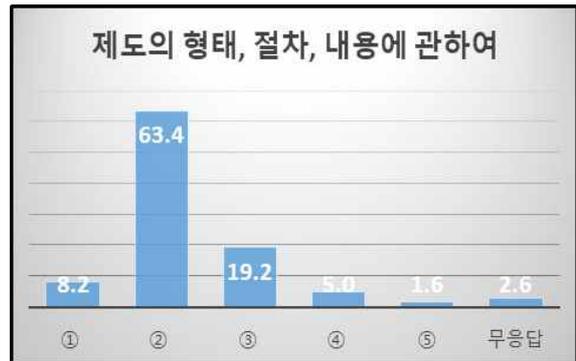
구속적부심 (형소법 제214조의2)	보석의 조건 (형소법 제98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9. 13. 의안번호 15494호로 발의된 것, 2019. 8. 8. 의안번호 21884호로 발의된 것)
<p>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단서 생략)</p> <p>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p>	<p>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p> <p>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p> <p>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p> <p>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p>



	<p>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p> <p>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p> <p>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p> <p>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p> <p>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p> <p>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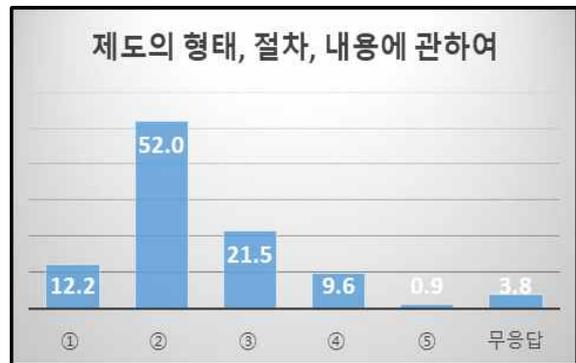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31	8.2
②	241	63.4
③	73	19.2
④	19	5.0
⑤	6	1.6
무응답	10	2.6
합계	380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95	12.2
②	832	52.0
③	344	21.5
④	154	9.6
⑤	14	0.9
무응답	61	3.8
합계	1,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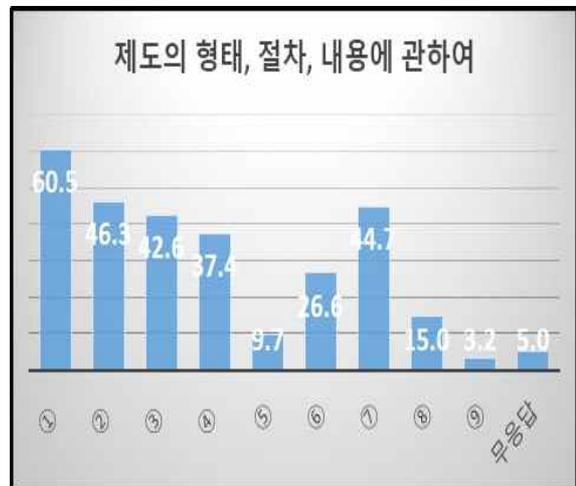


12. 보석의 조건(형사소송법 제98조)에 정한 조건 이외에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에 적합한 석방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복수선택 가능)

- ① 전화감청, 전자감응식 감시장치의 착용 등 감시조치에 동의하는 서약서의 제출
- ② 차량운행 금지,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보관
- ③ 금주, 마약 등 사용금지 ④ 무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소지 금지
- ⑤ 고용 유지, 구직활동 의무 부과 ⑥ 법원이 지정하는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금지
- ⑦ 의료기관 등에 의한 검사, 치료 ⑧ 모르겠음 ⑨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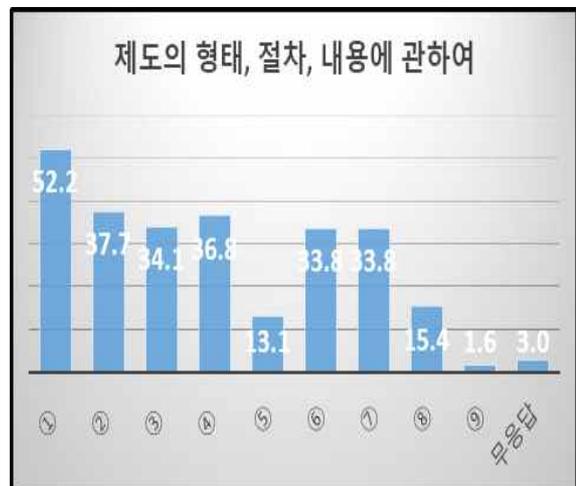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응답비율(%)	백분율(%)
①	230	60.5	20.8
②	176	46.3	15.9
③	162	42.6	14.7
④	142	37.4	12.8
⑤	37	9.7	3.3
⑥	101	26.6	9.1
⑦	170	44.7	15.4
⑧	57	15.0	5.2
⑨	12	3.2	1.1
무응답	19	5.0	1.7
합계	1,106	291.0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응답비율(%)	백분율(%)
①	835	52.2	20.0
②	603	37.7	14.5
③	545	34.1	13.0
④	588	36.8	14.1
⑤	210	13.1	5.0
⑥	540	33.8	12.9
⑦	540	33.8	12.9
⑧	246	15.4	5.9
⑨	26	1.6	0.6
무응답	48	3.0	1.1
합계	4,181	26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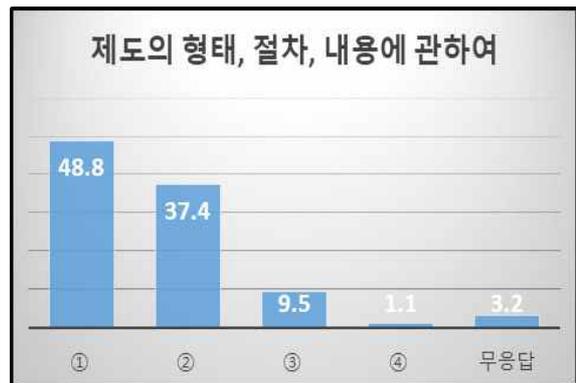
13. 비금전적 조건에 의한 석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방조건을 일반조건과 특별조건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성 있음(다양한 석방조건이 마련되더라도 실무운영상 보증금 납입 조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건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② 필요성 없음(비금전적 조건에 의한 석방제도의 도입 취지상 다양한 석방조건을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굳이 조건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

- ㉠ 일반조건 : 필요한 때에 출석할 것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나 위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조건
- ㉡ 특별조건 : 위 일반적 조건만으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 제한, 고용 유지, 보증금 납입 등(각호로 열거)의조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부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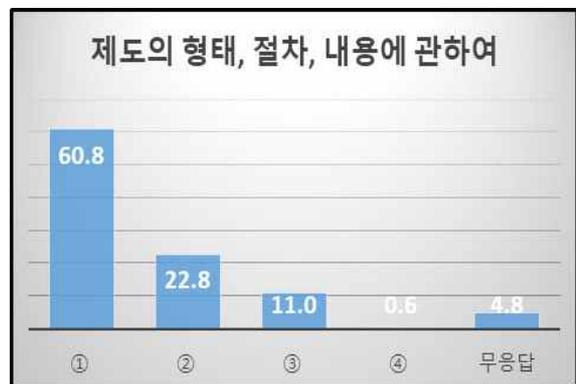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86	48.8
②	142	37.4
③	36	9.5
④	4	1.1
무응답	12	3.2
합계	380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974	60.8
②	364	22.8
③	176	11.0
④	9	0.6
무응답	77	4.8
합계	1,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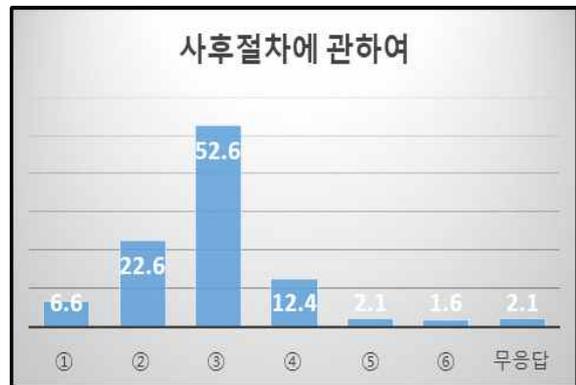
■ 사후절차에 관하여

14. 석방조건을 변경(삭제, 추가)하는 경우 심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적 심문으로 규정
- ② 경한 조건에서 중한 조건으로 변경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필요적 심문으로 규정
- ③ 당사자의 심문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적 심문으로 규정
- ④ 심문이 필요하지 않음
- ⑤ 모르겠음
- ⑥ 기타()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25	6.6
②	86	22.6
③	200	52.6
④	47	12.4
⑤	8	2.1
⑥	6	1.6
무응답	8	2.1
합계	380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297	18.6
②	467	29.2
③	559	34.9
④	130	8.1
⑤	97	6.1
⑥	6	0.3
무응답	44	2.8
합계	1,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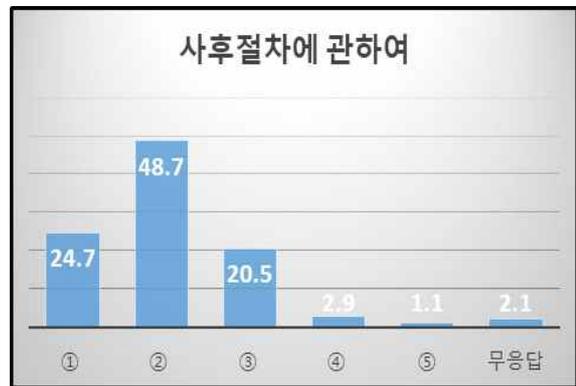
15. 석방조건을 위반하여 이를 취소하고 구금하는 경우 심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적 심문으로 규정
- ② 당사자의 심문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적 심문으로 규정
- ③ 심문이 필요하지 아니함
- ④ 모르겠음
-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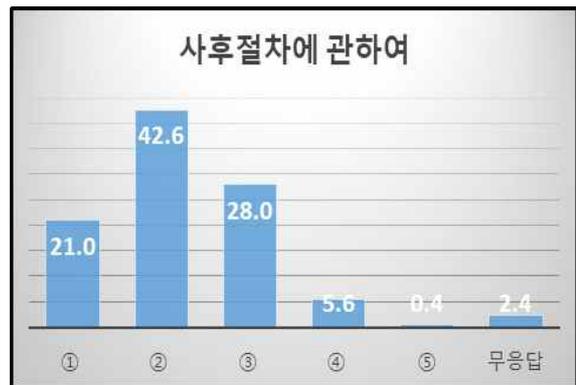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94	24.7
②	185	48.7
③	78	20.5
④	11	2.9
⑤	4	1.1
무응답	8	2.1
합계	380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336	21.0
②	682	42.6
③	448	28.0
④	89	5.6
⑤	7	0.4
무응답	38	2.4
합계	1,600	100.0



■ 불복절차에 관하여

[영장항고제도에 관한 논의]

- 현행 법률의 태도 : 현행 형사소송법 해석상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재항고는 불가능함. 한편, 구속적부심에서 기각결정,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기소전 보석)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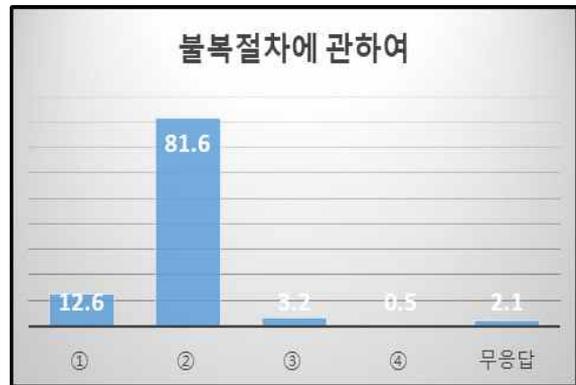


16. 현행 영장제도에서 영장항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성 있음(영장재판도 재판이므로 불복절차로서 항고제도 필요)
- ② 필요성 없음(구속적부심, 영장재청구를 통해 실질적 불복이 가능)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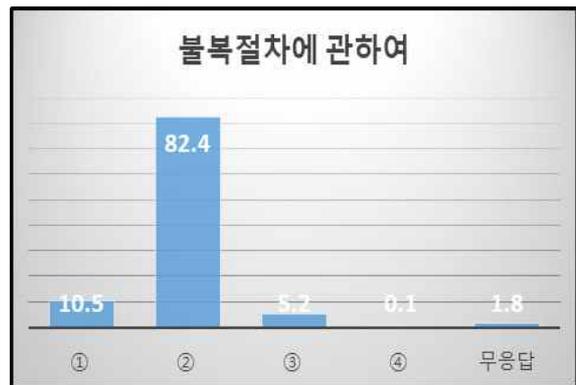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48	12.6
②	310	81.6
③	12	3.2
④	2	0.5
무응답	8	2.1
합계	380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68	10.5
②	1,318	82.4
③	83	5.2
④	3	0.1
무응답	28	1.8
합계	1,6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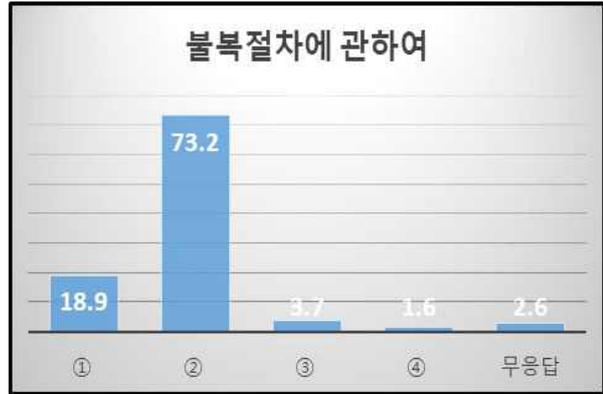
17.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구속영장 발부를 전제)이 가능해진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성 있음(구속적부심과의 균형상 석방조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제도 필요)
- ② 필요성 없음(구속적부심, 영장재청구를 통해 실질적 불복이 가능하고, 불복 제도의 중복으로 실무운영상 혼란 우려)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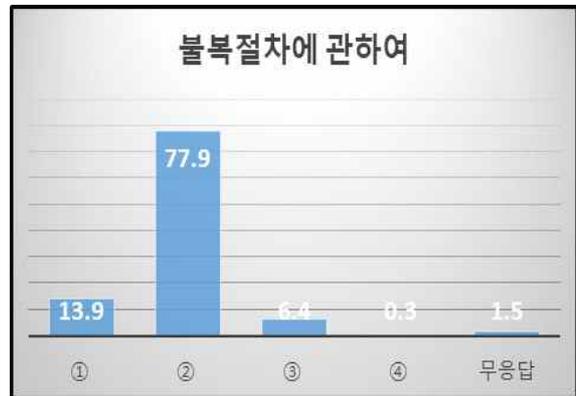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72	18.9
②	278	73.2
③	14	3.7
④	6	1.6
무응답	10	2.6
합계	380	100.0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구분	명수	백분율(%)
①	222	13.9
②	1,246	77.9
③	102	6.4
④	5	0.3
무응답	25	1.5
합계	1,600	100.0



18.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기재해주세요.

● 결과 내용(법관)

-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법원이 조건부 석방을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게 된다면, 검찰이 애매할 경우 자체적인 판단 없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는 방향으로 실무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불분명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바탕으로 법원과 검찰을 막론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인데,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법원과 검찰 모두 형사사법 절차를 타협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영장심사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건부 석방제도에 의할 경우, 해당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조문의 정리도 함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미국의 Arraignment는 수사기관의 체포 후 별도의 구속 결정 없이도 구금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조기에 법관과 대면하여 구금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절차로서,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석방해야 하는 우리나라 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바, 이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독립적) 석방결정 제도는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미국 뉴욕주의 경우 60-70%가 서약서만으로 석방되고, 10%는 구금 계속, 나머지는 금전 납입 조건으로 석방된다는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항의 설문(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을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본적인 체계와 형태)은 실무 운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인데 각 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장점, 단점 및 예상되는 실무 운영 형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어떤 형태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엇그제 점심식사 후 산책할 때 동료들과 우연히 이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입니다만 '형사공탁제도'도 빠르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다른 나라 제도를 참고할 때에는 그 나라 제도를 전체적으로 고찰한 후 참고해야지 입에 맞는 일부만 발췌해서 채택하면 우리나라 제도는 누더기가 되지 않겠는지요? 미국 제도를 흉내내려면 미국처럼 본안에서 100년, 200년 선고하는 제도는 왜 흉내내지 않으려 하는가요? 구속적부심, 보석은 기존의 제도라서 재미가 없는가요? 아님 보도자료용으로 내기에는 진부하고 신선한 매력이 없는가요? 차라리 구속영장 발부 조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요? 주거 일정, 도망 염려, 증거인멸 염려 없음과 현행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과는 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가요? 가령 '실형 선고 가능성 있음', '새로운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여러 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하고 있음' 등의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하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불필요함
- 현재 구속영장 심사의 중점이 구속 여부에 있어 범죄혐의의 소명에 대한 심리가 중심이 되어 있음. 그러나 조건부 석방을 원칙으로 하여 구속 심사 제도를 변경하면, 심리의 중점이 범죄혐의의 소명보다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것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불복 제도를 통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상급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을 통하여 형성된 조건들을 최대한 유형화하여 매년 규칙 등으로 공표함으로써 하급심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 등을 공식적인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하여 예측 가능성과 불필요한 불복을 줄이고, 상급심의 심리 부담도 줄일 수 있음.



- 이 논의의 배경이 되는 지점(현 상황에서 조건부 석방이 필요한 이유)이 궁금합니다(특히 비금전적 조건부 석방 제도의 세계적인 실례와 장단점 분석, 사례 수도 궁금합니다). 모든 제도가 다 의미가 있고, 좋은 취지이겠지만, 설문에 응하는 동안 추가되는 제도를 구현해 내기 위해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 특히 판사와 직원, 수사기관의 필수적인 협조(조건 미성취 여부 감시)가 필요해 보이는데, 제도만 구현해 놓고 실제 지원되는 인력이 없거나 그 노력이 미비하다면 현실적인 이유로 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설문조사시 배경이 되는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면 설문에 응하는 데에 부담이 덜하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분석(자료) 없이 설문에 응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제출하고 싶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제출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부디 현실적으로 필요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당사자들이 증거인멸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전제 하에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조건부 석방제도에서 부과한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석방취소 및 구금의 제한 이외에도 다른 제재를 과할 필요가 있음(위반 시 형벌조항의 신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의 상한선 연장 등)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초기단계 정착을 위해 조건을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증금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 두 가지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필요 피해자 또는 고소인에게 접근 금지 조건부 필요 당장 구속보다는 며칠 뒤에 구속하는 것이 나올 경우도 많음 - 예: 중요한 업무를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날 위험이 있어서 며칠 시간을 달라... 오늘 중으로 기초수급자용 임대아파트 계약을 작성하여야 자녀들이 입주할 수 있는데 구속되면 자녀들이 길거리로 나앉는다. 등등 이런 경우 구속집행을 며칠 간 유예하는 제도도 필요함. - 물론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로 석방하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집행 유예 제도도 필요함
-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 여부 및 그 내용의 설계는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장전담판사에게 구속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넘어 '조건부 석방 여부'까지 판단하게 할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재의 재판여건상 그러한 사정까지 영장전담판사가 충실히 심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조건부 석방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건부 석방제도와 구속적부심, 보석 제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구속적부심 사유의 개정 등을 통해 목적달성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현행 구속적부심 및 보석허가제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불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인신구속과 자의적인 영장발부 남발의 위험성만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도입 자체에 반대합니다.



-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조건부 석방을 한 경우에는,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석방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법제는 구속기간이 매우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석방 취소결정일부터 실제 구금일까지 구속기간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미국, 독일 등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프랑스도 중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법제에서는 구속이 피고인에게 정말 엄청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영장 기간과 영장 발부의 중간단계에서 여러가지 스펙트럼을 고려하기 위하여 조건부 석방 등의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법제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영장청구서를 조사하거나 검토하여 "필요성 없는 영장신청"이나 "인권에 반하는 영장신청" 등의 비율이나 통계, 영장신청이 기각된 경우와 영장신청이 없었던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 비율" 등 통계(영장제도가 피고인의 소재파악이 아니라 본안재판화 하는 현실)를 작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길 요청함(인권위원회와 협업 등을 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건부 석방제도에 찬성하나 조건부 석방제도의 운영 형태 및 방식 등에 따라 영장담당판사 및 직원의 업무 부담이 우려됨
- 제도는 간단하게 설계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음
- 구속적부심, 보석 제도 등 중복된 제도를 통일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2년간 영장전담 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건부 석방제도'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절실히 느꼈습니다. - 다만, 영장심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최대한 "간명하게" 제도를 설계함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보증금에 치중하면 유전무죄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을 강조함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전자감시장치나 보석보증금의 납부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보다 덜 침익전 수단으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면, 그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함) - 현행 구속영장제도는 형사소송의 일방당사자(검찰)에 의해 발부/기각이라는 이분법적 판단구조의 의미가 왜곡된채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됨(발부시 본안재판 의미 약화, 기각시 수사 방향 점검 수단으로 활용 등), 그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함 -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는 사실상 일방 당사자의 신청과 자료제출에 의해(ex parte) 결정이 주도되는 구조이고, 피의자에게는 제한된 의미의 변론만 허용될 뿐임,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영장청구를 주도하였던 그 일방당사자에게 또다시 불복수단을 부여하는 영장항고제도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생각됨 / 일방의 신청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거기에 대해 구속적부심 절차를 사후적으로나마 허용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균형에 맞



는 것이라고 봄

- 현재의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관련 절차가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보석의 3단계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의 인신구속 실무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보석을 모두 하나의 체계 내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2) 변화된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에 따라 구속기간 제한 등을 축소하여 법원이 합리적으로 인신구속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몇번 당직만을 해본 경험이긴 합니다. 사안 자체는 중하지 않은데, 피해자 가해 우려가 있어 피해자 접근을 막아야 한다거나, 경찰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아 주거가 불분명하여 구속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불구속하거나,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하면 풀어줘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들의 부과 요건이 더 복잡해지거나, 사후적인 절차들이 추가되어 간다면 조건부 불구속은 오히려 제대로 이용되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제도는 최대한 심플해야 사랑받는다는 면에서 보면, 조건부 불구속 제도는 현재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서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선취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 본제도 도입시 수사기관 구속기간, 피고인 보석제도에 대하여도 개정 논의가 필요(수사기관 구속기간 연장제도 폐지. 본안 구속사건의 경우 필요적 보석 원칙 관철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
- 현행 보석제도와 차이점 불분명 앞서 본 실익은 기소전 보석제도 수정하면 없어짐 결국 조건부 석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세간의 악평만 자초할 뿐으로 생각함
-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금의 보석보다는 널리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적어도 현행 보석제도에 준하는 다양한 조건 부과 가능성은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긴급, 신속하게 처리되는 현재의 구속영장 심문절차를 감안하면, 변호인이나 법원이 충분한 조건심사를 할 수 있을지도 우려됩니다. 신속 결정에 너무 많은 선택과 수단을 부여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모든 수요를 구속 초기에 완벽하게 충족시키려는 것은 과욕이며,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 당직으로 영장심문을 할 때, 피의자(여성)가 고령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흥기로 복부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청구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정신적 치료가 더 필요하고 배우자가 처벌을 희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비슷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던 중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자녀 등 가족들이 일정한 치료를 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확보될 때까지는 구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이후에 상황이 확보되면 보석 청구 가능하므로)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위험성이 어느 정도 관리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면 법관이 발부와 기각의 양자간을 놓고 고



민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가족들도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불구속재판의 원칙의 실질적 구현과 영장심문의 본안화 방지, 영장을 단순 기각할 경우 장래 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함. 현재 국민들은 영장 발부 여부를 처벌 여부의 결정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법원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법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비난을 받아 그 정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 반드시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고 세부적인 차이는 제도를 시행해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함.
- 조건부 석방제도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고, 다양하고도 적절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중요함
- 소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우려됨
- 조건부 석방제도에서의 '조건'을 잘 활용한다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혁명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창의적인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보호관찰부 형사 판결에서 선고된 다양한 특별준수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을 것, (소년범의 경우 주로 선고되는) 야간외출제한 전화, 피해자 접근금지, 알코올 치료 받을 것 등은 보호관찰소와의 협조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구속영장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구속적부심단계에서 비금전적 조건부 석방결정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개정, 수정, 보완하는 것이 더 혼란이 적을 것 같습니다.
- 영장 심사단계에서 전자장치 부착부 조건부 석방을 강력하게 지지함. - 구속의 이유인 도망을 막으면서도 사회와 격리를 막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임 - 도망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보증금 등 금전적 불이익보다 경제적 불평등 논란을 줄일 수 있음 - 구치소 과밀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자동화된 관리로 예산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극과극의 선택만을 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영장제도에 일대 혁신이 될 것임

● 결과 내용(법원공무원)

- 구속의 필요성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중요성을 달리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과도 균형이 필요하나 조건부 석방이 마치 신청만 하면 불구속으로 재판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번지게 되면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건부 석방의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위반시 즉각 구속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도록 당사자의 신변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감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제도의 도입의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보석제도, 체포및구속적부심제도 등 석방제도가 있으므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 석방제도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 왜 논의되는지 모름만큼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됨. 결국 가진자들에게 구속을 면할 면죄부를 주는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 생각함.
 - 적부심사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구속영장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 등을 도입한다면 절차의 번거로움과 복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검사의 수사상 필요에 의한 인신구속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는 것이 구속영장심사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는 최소한으로 그치고 추후 판결의 예단이 될 사유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될 경우 실무상 혼선만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석과 구속적부심이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추가적인 석방제도는 중복된 절차이자 혼란만 가중하는 불필요한 요구라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구 만들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잘 다듬고 보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절대로 반대합니다. 지배계층에서는 환영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 범죄의 행태에 따라 다양한 구속과 불구속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구속과 보석의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여러 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모습, 다양한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도록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현행제도도 판사의 자의적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비판을 받는데 석방제도까지 둔다면 더 자의적이되고 판사의 정치화가 염려됨
 - 불복절차가 중복되면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입법되길 원합니다.
 - 법원에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접근금지 등의 현실적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사법경찰들에 의해 집행되어야 되나 현실적으로 명확한 규정의 준비없이 경찰들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많이 약화될 것이므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 서약이나 보증만으로는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고, 결국 보증금이 있는 사람들, 즉 유전석방, 무전구속의 경향으로 흘러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많으므로, 현재 강력한 법집행이나 처벌을 원하는 국민 법감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추후 장기적으로 국민적 법감정과 법제도와의 거리를 좁힌 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있었는데 갈 곳도 없고 모아둔 돈도 형수한테 다 맡겨 놓았다고 하는데 형수님 집에 얹혀살면서 형수한테 범죄를 저질러서 형수 집 말고는 갈 곳이 없어서 구속이 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조건부 석방제도에 갈 곳 없는 사람의 경우 갈 수 있는 시설이 제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구속수사의 필요성 등으로 조건부 석방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 문항6번과 관련하여 조건부 석방으로 할 경우 조건성취를 검찰에 제출하고 석방 되지만, 다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 법원 업무가 많아지면서 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것으로 영장에 대한 직원들의 긴장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구속영장 발부가 되어야 엄격한 법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때문에 대체로 조건부 석방에 대해 찬성하지 않으나 한다면 철저한 기준을 원칙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려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 반드시 필요함
- 인신구속이 되는 상황이므로 엄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장에 조건부 석방제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장에 항고허용이 되면 구속되는 모든 사람이 다 항고할것 같은데요.... 구속되는 상황에 항고제도라.... 과연 뭘 위한 것일까요?.....
 - 사법신뢰가 약화되는데 이용되어질까 염려되므로 신중을 기하였으면 합니다.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리 체제가 갖추어진 국가에서 행정부의 지나친 권한의 치중이 문제가 심각함. 사법부 독립적으로도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여러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보수적이고 변하지 않으려는 많은 관리자들의 생각으로 인하여 판단에 고충이 생기거나 윗 선에서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시 떨어지는 눈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말만 사법부 독립이지 사후 보고가 웬 말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적 적폐문제가 심각함.
 - 제도의 정착화를 기대합니다.
 - 석방의 조건이 된 금전의 가치보다 증거인멸 등의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기는 자는 언제든지 금전을 포기하고 증거인멸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 조건부 석방으로 인해 석방된 자가 조건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를 대비해 석방자에게 피해금액을 보전을 위한 담보금을(보석금,보증금과 별도로) 민사처럼 미리 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방된 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피해자는 분노할 것이고 언론의 보도로 국민들도 막연히 법원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담보금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보상이 민사소송(손해배상) 없이 즉시 지급되기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자를 구제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의 피해구제, 법감정 등의 명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조건부에 대한 논의보다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인력 및 법적 체계에 더 큰 중심을 두고 논의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할 듯 합니다.
 -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발부나 기각만 가능한 상황인데, 발부나 기각 기준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 구속과 불구속 경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조건부 석방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이 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사법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는 구속적부심이란 절차가 마련되어있으므로 따로 신청권을 주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실무상 구속적부심과의 차이를 못느끼겠음).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조건부 석방제도를 신청할 권한을 주고 구속적부심까지하면 똑같은 사유에 대하여 중복심사로 인해 피로가 있고 만약 두번 다 기각이 날 경우 피의자 스스로도 재판에서 구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편견을 미리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구속발부를 전제하여(구속발부 동시에 조건부 석방제도를 운영할 경우)할 경우 구속일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또한 향후 기소 후 재판부에서 재판 중 구속을 하게 될 경우 보석을 허가 해줘야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실무진입장으로는 기존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새로운 절차를 계속 마련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 도입필요성없다고 생각함
 - 실무자들에게 또 하나의 업무절차가 늘어나 일이 많아질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나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부응하는 제도이므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구속적부심이나 보석등 절차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



- 에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미 규정된 조항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굳이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영장청구시 담보에 의한 석방조건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
 - 기존의 영장발부가 발부 또는 기각으로 정해져 개별적 사건의 특수성에 맞는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역할을 위한 재량권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임. 이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보장 및 인권보호, 가족들의 생계 등을 보장을 위한 법원의 영장발부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시대 분위기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무죄추정의 원칙상 석방제도를 다양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일반 자영업자들은 구속이 되면 가정 및 영업장이 무너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므로 흉악범이 아닌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여야하며,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다양한 조건부 석방이 고려되었으면 하고, 또한 조건부석방 후 도망, 자살, 증거인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장을 담당하는 법관들도 불구속을 대원칙으로 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건부석방제도가 도입된다면 구속보다는 석방의 경우가 더 많아질것 같은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전반에 깔려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제도로 보임. 나. 석방조건을 실질적으로 심사, 관장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제도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임. 다. 위와 같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에 부담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임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재판출석에 적정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예전에는 검찰단계에서 한검 더 걸러졌지만 지금은 수많은 경찰들이 바로 영장청구를 하기 때문에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것 입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정말 죄가 없는데도 구속영장 청구하는것을 많이 보았기에 조건부 석방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조건부 석방제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건의 실질적인 성취 여부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있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건 성취 여부를 법원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해야할 검찰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이상 관심이 없어 관리되지 않을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없다고 봄.
 -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전제로 구속적부심, 영장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나 수정이 필요
 -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조건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험상 재산상황이 좋은 경우와 특히 정치적 사회 지배층의 제도 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증금 납입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예외적으로 보증금 납입 조건 없이 기타의 조건들을 활용하여 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영장 기각과 발부의 양일화된 판단보다 중간적인 성격의 제도로 인신구속에 대한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구속여부 단계에서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증금액보다는 다양하고도 엄격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위하여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각자가



-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범위내에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증금 납입 조건 : 피의자의 자산에 따른 불평등 / 주거제한 : 현실적으로 개별제한 불가능하며 주거이탈 후 새로운 범죄 발생시 누가 책임질것인가 / 피해자 접근금지도 마찬가지다. 이상과 현실을 구별했으면 한다.
 - 영장접수 계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판사님 성향에 따라 구속영장발부율이 서로 다르거나 하여 영장판사에 따라 구속의 운명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보았습니다. 영장발부는 되도록 신중하게 하고 구속영장발부를 전제로 하되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을 하는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구치소 과밀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초범 위주로 조건부 석방을 허용하고 재범등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범 죄한 번 없이 살다가 한 번 실수로 구속사유에 범죄를 범하더라도 한번은 조건부 석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운으로 구속이나 불구속이냐로 기로에 놓이기 보다 처음에는 웬만해서는 구속이 안되고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중대범죄와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 등, 범죄 경중에 따른 조건부 석방의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인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실제 구속,불구속의 기간이 수사 및 기소단계를 감안하면 기간이 짧을 뿐더러 구속적부심, 기소후보석 청구권이 있음을 감안할 때 번잡한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음, 더구나 불구속, 구속여부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 위와 같은 조건부 석방제도를 활성화할 경우 대부분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고 피해신고, 고소 등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업소나 생활근거지를 찾아가는 등 범죄가 있는지 얼마되지 않아 곧바로 피의자가 피해자와 대면하게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바, 우리 정서상 피해자의 2차피해 및 분쟁이 더 많아질 수가 있고, 공권력발동에 대한 의구심, 범죄처벌 가능성에 대한 경시 등 부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기존 제도를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함.
 - 불구속수사원칙에 입거하여 될 수 있는 한 조건부석방제도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급박한 신변구속으로 인한 경제활동,금전거래, 중단과 함께 일상적, 사업적 계획된 일들을 마무리 하지못함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너무 클수가 있음.
 - 조건부 석방제도가 가진 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로 오인되지 않도록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 보석허가율은 타국가 대비 굉장히 낮으므로 수용기관 과밀화에 따른 국고부담이 심화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수사 원칙 취지에 비추어 봐도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상황이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리나라 보석제도 하에서는 이를 고려한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최근 도입한 전자보석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미국이나 타국가의 보석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보석허가율을 점차 높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설문조사 보내 주신 내용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도 구속영장 단계에서 석방제도를 검토하신다고 하니 반갑고, 외국의 제도를 잘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도 고도의 합리적이고, 개연성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요구됨 (도주우려 증거인멸등의 구속영장 발부사유는 판사의 주관성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조건부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이 가능해 진다면(현재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영장발부의 효력



- 및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지체됨에 따라 부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
-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이라는 양단의 결정을 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신구속의 최소화라는 형사사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 영장 업무를 직접 담당하진 않았지만,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절차가 마련돼 있으므로 굳이 절차를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절차의 세분화로 인해 오히려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혼란스러워질 우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우리나라 전통적인 보석제도 하에서는 보석허가율이 높아지기 어려우므로 다른 나라의 제도를 연구하여 보석허가율을 높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잘 만들었으면 합니다.
 - 구속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시 도주우려없음 이나 보증금제도나 원래의 영장발부시의 여러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건부 석방을 하게 되면 자가당착인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놓고 다시 그이유가 없어서 조건부석방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조건부석방제도를 도입한다면 원래 영장에 쓰여져 체크한 이유 이외의 사유로 조건부 석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과 증거 조작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아닌 경우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사료됨.
 - 현재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가중시키고 혼란을 가져오는 제도라고 생각함
 - 현 구속영장 심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현재도 불구속을 기본으로 하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제도만이 난립하고, 실무에 큰 혼선을 빚을 염려가 있음. 조건부 석방으로 인하여 혹시나 피해자가 위협을 받거나 2차 피해를 받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조건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발 좀 많이 생각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음.
 - 조건부 석방제도를 위반한 경우 전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함
 - 조건부 석방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건부과가 충분하여야만 제도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고, 피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반인륜적인 범죄등 강력범죄에 대하여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는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금 있는 제도만으로도 차고 넘치는것 같은데 자꾸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오히려 재판 업무에 혼선 및 업무과중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 조건부 석방제도 또한 취지와 다르게 정치적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의 진통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강력사건과 일정 형량 이상의 사건들에 대하여는 예를 들면 살인, 강간, 강도 등 일정액 이상의 사기, 횡령 등 조건부 석방제도의 적용이 불가한 사건유형을 두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음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같은 제도 설치 필요(다만, 신속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
 - 남 항고(석방신청) 이 우려됩니다.
 - 제도 자체가 필요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움,
 -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피해자 보호, 증거인멸방지, 추가범죄의 위험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 현행 영장제도의 구속사유가 단순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행 유형별로 맞춤형 조건을 구체화 해서 제도화 하면 법원의 영장심사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조건을 위반한 피의자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하여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 위 제도는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인권보장적인 제도로서 위 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 영장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면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피의자들의 방어권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결정과 관련하여 영장 실무 상으로 시간적 제약(긴급, 공탁, 보험증권 등)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실질심사가 오후 5시 이후에 마쳐질 경우, 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할 것을 예상됩니다.
 - 법원은 독립적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경외심과 존경심으로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제도의 개정이 없이 오래전 제정된 법을 기초로 재판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국민의 불만은 법원이 형평성을 잃고 자의적인 판결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려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로지 가해자에 대한 인권과 그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인식이 강한 현 시점에서 영장단계에서 석방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의 국민들의 인식을 더욱 악화시키고 법원의 권위를 실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법원은 바닥으로 떨어진 권위를 높이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국민들은 중국의 법원 판결에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의 법원 판결에는 불신이 가득합니다. 과연 설문을 요청하는 제도가 정말 현시점에서 논의를 해야될 제도인지 재고하는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구속영장에 대한 조건부 석방의 통일된 기준과 운영을 위해 당직법관제도를 폐지하고 영장 전담제의 전면 시행과 영장 등 전담 직원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외국 입법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건부 석방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나, 현재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은 엄벌주의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영장 심사를 본안 재판과 같은 재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어느 정도 확정된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만약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고,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구속되는 자의 수가 줄어든다면 엄벌주의의 반하는, 이를 테면 솜방망이 처벌, 돈이 있는 자만 석방이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고, 그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을 것으로 고려됨으로 신중하게 제도 도입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범죄를 범한 피의자라면, 그 죄의 성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합니다. 석방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불안감 조장, 도주우려 등을 고려할때 조건부 석방 제도는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향을 위하여 독립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 볼 필요가 있고, 국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원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사건 내용에 따라 그리고 피고인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법을 집행하는게 필요해보이며 조건부 석방제도의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 수사의 결과가 구속으로만 평가되는 시선에서 조금은 자유로울수 있도록 조석부 석방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 수사단계에서는 아직 수사기관이 우월한 위치에 있고, 증거수집이나 입증에 유리한 부분만을 취거하여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역



- 올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에게 방어할 시간을 주는 것이 무기평등의 원칙과도 부합함.
- 조건부 석방이 있더라도 조건을 어긴 경우 임의적 신문(당사자 청구, 법원 필요)절차를 거쳐 특단이 사정이 없는 한 구속을 집행하도록 해야만 구속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더욱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소송경제 측면에서 유리하고,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면 법관과 법원일반직의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국민의 사법 정서는 이미 엄벌주의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지않아도 판결에 대한 불만의 화살이 이미 법원을 찌르고 있음은 법원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있는 피의자 마저 조건을 붙여 석방하게 되면 이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을때 비난의 화살은 결국 사법부가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영장 이후에 다시 구제 받을 길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러 갈래 길을 만든다는 것은 혼란만 야기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제반 상황이 갖춰져 있는지도 매우 의문입니다.
 - 지금도 웬만하면 구속이 되지 않아 범죄가 급증하고, 작은 범죄를 큰 범죄로 키우는 경향이 만연한데, 여기에 더하여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돈 많거나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고, 갑질 등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례가 일반화되어 일반 시민들, 더 나아가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들은 더 이상 국가에게 기댈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제도는 돈 많고, 힘 있고, 머리 좋은(?), 주거 안정에, 반성하는 모습, 정신이상 등을 이유로 구속이 안 되는 사람들) 범죄자들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가능성이 크고, 사회는 불안과 불신에 떨며 더이상 국가에 기대할 것이 없어 개인의 일상생활을 위축시키고, 사적 구제가 최선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만일 정말 필요하다면, 구속을 대체할 방법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기각해야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가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 및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 범죄에 따른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중요한 양형인자를 추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죄에 따른 조건부 석방기준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 구속영장은 인신문제이므로 중요하지만, 항고와 같은 이의신청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수사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업무만 과중될 뿐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판사의 재량권이 확대(구속, 불구속, 조건부석방)되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석방의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관이 판단을 함에 있어, 명확하게 규정된 조건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에 부족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아무리 훌륭한 제도이더라도, 결국에는 틈이 생겨 그 제도를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입법안을 기대합니다.
 - 낡은 형사소송 제도와 인신구속 절차를 선진국형으로 바꿔나갑시다. 구속되면 유죄? 석방되면 무죄? 국민들의 오해와 편견을 깨야합니다
 - 생계형 범죄의 피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과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구속여부에 따라 사회적으로 유무죄를 판단 받게 되어 무리한 구속, 행정편의적인 석방이라는 오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인식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다소 기계적인 구속, 불구속의 양자간 판단보다는 엄격하면서도 다소 유연



- 한 조건부석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적으로 조건부 석방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의자의 건강 또는 생계와 관련해서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금전적 조건부 석방제도가 확대되는 것은 피의자 피고인 구속의 근본적 취지와 필요성 그 근거와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의 장점을 고려하여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악용의 우려 또한 크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구속영장발부제도가 엄격한 판단하에 구속영장이 발부 또는 기각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체적인 조건 적용방식, 영장담당 판사님과 직원들의 업무처리 방식 변화, 업무량의 증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증원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회지도층에 대한 조건부 석방으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리라 생각함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영장 발부율도 낮은편이므로 위 제도도입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법원으로서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하여 보다 빠른 실질적 재판을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구속기간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힘쓰는게 적절하다고 본다.
 - 구속영장 발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현장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입장을 고려하였을때 피의자를 구속하는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업무가 과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세분화가 될경우에 업무를 이원화하여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구속해 온 피의자를 놓치고 또다시 구속하기위해 애꿎은 인력을 낭비할 필요성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로 지명된 사람들은 자의든 타의든 법을 어겼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사람이 사회에서나 주변으로부터 경제활동과 가정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회 전반적인 제도개선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조건부로 석방하는 것은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과 조건이 상충하는 형태가 많을 듯합니다.
 -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항상 제도를 시행할 경우,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없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업무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 날수 있으므로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탁상행정이 아닌, 실무자 입장에서고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 영장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구속적부심과 보석제도가 엄연히 보장되므로, 현행법령에 근거한 업무처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구속 필요성과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 제한과의 사이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 법감정상 제도의 활용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기준을 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주거 제한 등 조건의 경우 필요적 전자감응장치 착용 등 그에 상응하는 부속절차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법령개정 및 제도실시 이전에 유관기관의 인력증원 등 실질적인 감시체계 등과 연계하여 빈틈이 없게 해야할 필요가 있음 (ex. 피해자 접근금지의 경우에도 사실상 피해자가 방치되는 실무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건부 석방제도는 반드시 절차에 상응하는 관련 실무절



- 차를 함께 정비하고 완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관계만을 따져 조건부로 석방을 하더라도 권력이나 재산의 유무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모두가 공평한 입장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만일 조건부 석방제도를 채택하게 된다면 필수인원 배치바람
 - 조건부 석방제도에 적극 찬성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U.S marshals service fugitive task force(미 연방보안국 탈주자 전담부서)를 동원하여 법관의 명령에 의한 재산압류, 당사자 구인(체포)등 적극적인 불이익으로 당사자가 조건을 정직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고 이에따른 법원과 협력 법집행기관의 후속 조치 규정 또한 짜임새 있게 구성 규정하여 시행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 조건부 석방(피해자 접근금지, 일정장소 차량및 운전면허증 유치, 차량운전 금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으려 함 피해자의 신고(법원, 검찰, 경찰) 법원은 (예상부서) 법원집행관이 차량(재산)을 압류 하고, 보안관리대직원이 당사자를 구인(체포) 하여 필요적 심문등 후속절차(구속등)를 진행
 - 1.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현과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구속의 양분적인 결정(발부, 기각)에 벗어나 피고인의 적극적인 방어권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해 보임 2. 다만, 중대범죄로서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의 보복이 상당히 의심되는 범죄 등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석방제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단계를 거치고,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적부심과 보석제도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부 석방제도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조직은 아니지만 검찰의 영장청구나 기소권 행사가 업무 실적 쌓는 느낌으로 행해지지 않고) 영장단계에서 충분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현행 제도를 잘 운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부와 형사접수, 영장업무를 모두 경험하면서 대부분은 구속될 만한 사람들이 구속된다고 느낀 적이 많았고, 다만 정신질환자의 경우 구속보다는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기에는 현재 구속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법감정에도 크게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 조건 부과를 통해 불구속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형사재판권의 영역까지 가지고 와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오히려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주거제한이나 접근금지 등의 조건 부과를 통해 불구속하는 것은 현재 구속사유에서 정한 사유가 보통 죄질이 좋지 않은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볼 때, 피의자의 2차 가해 우려, 도주 우려, 수사 방해 등의 문제를 현 경찰력으로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막기위해 100명을 풀어주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대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영장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임은 알고 있지만, 현재 국민 정서가 사법부를 불신하고 형사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은 피해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부분보다 가해자의 인권에만 법이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형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저 또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구속영장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면 이 역시 주로 금전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돈이 있는 피의자들은 나가는데 돈이 없는 피의자들은 구속되게 되어 돈이 있는 피의자들을 위한 제도가 될



- 수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구속영장신청 시에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서든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수사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 사유를 부풀려서 기재하는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장담당판사님들께서 압수수색영장 등의 경우는 일부 기각 결정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영장의 신청의 경우도 반환시켜 다시 신청사유를 정정하도록 업무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사권이 경찰로 대부분 넘어가면서 이러한 구속사유 부풀리는 관행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피의자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더욱 흉포화, 잔인화 되는 범죄 추세에도 불구하고, 구속율은 과거에 비해 높지 않은바, 이에 더해 구속을 제한하는 제도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임. 이미 구속을 제한하는 여러 법령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바, 단지 외국 사례를 따르거나, 무언가 외국에 비해 누락된 느낌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함. 기존 제도의 개선과 법령개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조건부 석방 결정에 따른 조건을 잘 따르는 지에 대한 감시를 위한 집행 기관의 인력이라든지 협조 부분이 잘 이뤄져야 실익이 클 것 같습니다. 조건부 석방결정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는다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 피해만 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일 것 같습니다.
 - 조건부 석방제도의 조건을 다양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석방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형평을 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 코로나19 시대의 폐쇄적 구금에 대한 일시적 부담감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면 공감은 되나 이미 구속적부심, 보석제도가 있는데 또다른 사전,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정립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 조건부 석방사유에 개인의 치료목적에 따른 조건부석방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보석보증금 조건부 석방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대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 구속영장 업무 처리가 너무 복잡하여 혼선이 초래될 염려 있음
 -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인적 및 물적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도 피해자의 권익이나 인권을 보호하는 데는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므로, 조건부 석방제도를 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여 조건 등이 엄격하여야 할 것 같음.
 - 구속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져있고, 이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제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 충분히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함.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 일반 피의자, 피고인보다 사회적 강자에게 또 다른 불구속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음. 특히 조건부 석방규정의 하나인 접근금지의 경우 다른 규정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결정문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경우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있음. 보증금 납입의 경우는 사회적 강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밖에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함. 영장항고제도와 관련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실질적인 불복제도가 구속적부심이고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다시 판단하는 객관성이 담보되므로 굳이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할 것 이 아니라 구속적부심을 폐지하고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구속적부심제도로 운영하여도 피의자 인권보장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결국 구속적부심의 기각결정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구속적부심 제도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음. 조건부 석방규정을 새로 만들것이 아니라 구



- 속적부심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수립이 필요해보임
- 국민들은 만인앞에 사법권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단계에서 조건부석방제도 도입은 사법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자칫 힘있는 변호사들과 중심을 잡지 못하는 법관들 사이의 거래라고 오해할 확률이 많고 사법불신만 더 깊어질 것입니다. 법관들이 본인의 생각과 다른 판결을 해도 그것을 존중하는 시대가 온 뒤에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관의 획기적 증원을 통한 좋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시행되어야 빛을 볼 수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 구속영장실질심문에서 구속영장 심사단계사유까지 판단하기 어렵고, 구속적부심 접수, 결과통계내역을 살펴 구속영장발부로 인한 피해사례 또는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조건부 석방제도의 취지를 현 구속적부심 절차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은 법원만의 판단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검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각 업무처리의 주체와 업무흐름도에 대한 의견이 모든 기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출이 될때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구속영장발부된 피의자에게 구속적부심 뿐만 아니라 보석신청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도 위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 피의자 구속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시각등을 고려할때 '유전무죄'유권무죄'로 비쳐져 또하나의 사법불신의 씨앗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이슈가 되는 범죄나 중대범죄에는 이제도의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조건부 석방보다는 영장실질심사의 심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구속영장 발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형사실무를 하다보면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과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 처음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은 사람의 재범률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반성의 시간이 없어서다. 그 예로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이유를 피고인에게 물어보면 처음부터 구속이 되었으면 그 죄가 중하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을텐데 불구속이 되니까 별 것 아닌것처럼 느껴져 다시 재범을 하게된 다는 것이다. 조건부로 석방이 되어도 같다고 여겨지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 이제까지 경험에 의하면 똑같다고 여겨집니다. 조건부석방은 한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것도 평생 한 번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